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의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명부를 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모집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공고기간 : 2021. 2. 25.(목) ~ 3. 16.(화) (20일간)

2. 참가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건축 또는 종합분야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소재한 기관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가. 시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나.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다. 폭발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라.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마.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바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자.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차.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2. 25. (목) ~ 3. 16. (화) 18:00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02-2147-3052)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로 우송), 이메일 접수

1)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7층 건축과)

2) E-mail : tenten9090@songpa.go.kr

3) Fax : 02-2147-3880

※ 신청마감일 내 송파구청 도달분만 유효(마감일까지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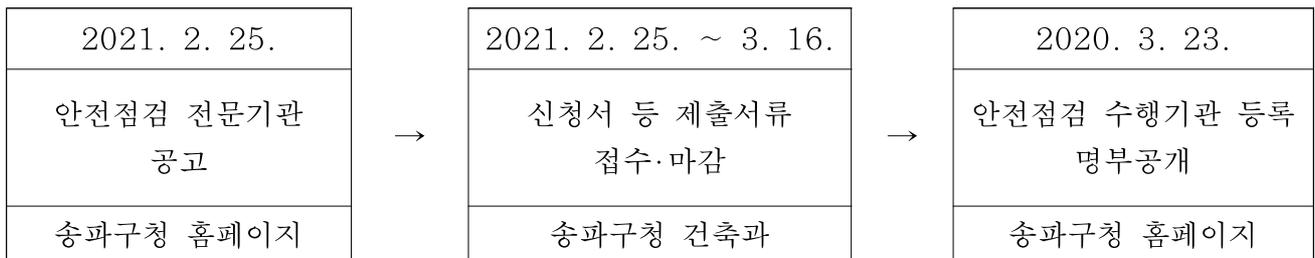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다.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수행기관의 임기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남현욱 주무관 ☎02-2147-3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 1부.